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검역관리위원회 및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설치 》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83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1. 개정안의 내용	2
------------------	---

2. 주요 검토사항	5
------------------	---

※ 참고자료

1. 감염병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10
---------------------------	----

2. 위기경보 단계별 주요 대응 활동	12
----------------------------	----

3. 검역관리위원회 및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운영 계획	13
--------------------------------------	----

I. 개요

1.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08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5. 3. 19.
- (3) 회 부 일 : 2025. 3. 2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역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u>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 <u>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위원회</u>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5조(검역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검역관리위원</u>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 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 (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신설>

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① ----- 관리위원회----- 제12조제1항제2호의 검역조사 수행을 위하여 검역관리지역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

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이하 “상황평가협의회”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1.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상황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요 검토사항

- 먼저, 별도의 검역관리위원회 신설과 관련된 것으로, 개정안에서는 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역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있음.
- 현행법상 검역관리 기본계획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하나인 검역전문위원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또한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검역전문위원회 구성현황 >

연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전문분야
1	위원장	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보건학
2	위촉직	시○○	조교수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3		진○○	전문의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4		백○○	교수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5		손○○	부교수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병역학
6		유○○	부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병역학
7		이○○	교수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병역학
8		신○○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전염병학
9		김○○	교수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바이러스학
10		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보건·복지 등
11		류○○	교수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12		김○○	교수	한림의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
13		염○○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14		윤○○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학
15	임명직	조○○	국장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
16		강○○	과장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17		이○○	과장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

- 신종 감염병 등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검역 부문의 체계화와 함께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역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의미가 클 것으로, 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 다만, 검역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현행 「검역법」(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검역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검역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검역 대상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검역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하고, 그 외 검역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검역관리위원회의 위원 수 등 그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률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개정안(제14조의2)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금번 개정 내용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입국 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참고로 금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14개 관계부처 참여)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7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운영하면서, 항공 정기편 인가 및 항공편 일시 중단 등 항공편 조정 협의, 방역강화 국가 지정 등의 조치사항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도 있음.

<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 개요 >

- **(주관)** 중앙사고수습본부('20.7월~'22.6월) → 중앙방역대책본부('22.6월~)
- **(참가 기관)** 국조실, 법무부, 국토부, 외교부, 고용부, 해수부, 문체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중수부, 방대본, 행안부 등
- **(연혁)** 제1차 상황평가('20.7.2.) 회의 이후 24년 12월까지 운영(제1차~제127차)
- **(주요 안건)** 방역강화대상국가 등 고위험 국가지정, 방역강화국가 대상 항공편 운항 제한 및 비자 발급 제한,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등
 - 코로나19 당시 **14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를 통해 **방역강화국가 지정,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조치사항 협의**

- ① **(방역강화 대상국가)** 최근 해외 유입 확진환자 다수 발생 국가 등에 비자 및 항공편, 좌석점유율 제한,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요구 등 **사전적 방역 조치 시행**
- ② **(추이감시 국가)** 현지 확진환자 증가 등 지속적인 추이 감시가 필요한 국가
- ③ **(교류확대 가능국가)** 국내 대비 확진환자율,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 기업인의 사업적 목적의 단기 해외출장 허용 국가

- 전체 **127회** 중 총 **103번**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논의

<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 사항 예시('20. 7. 15.) >

일자	차수	주요내용
'20. 7. 14.	제3차	■ 방역강화 대상국가 2개국 추가 지정('20. 7. 20.~) - (현행) 방역강화 대상 국가('20. 6. 23.~) 4개국 - (조치사항) 외국인 전수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비자 제한 ■ 항공기 입국 교대선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20. 7. 24.~) - (조치사항) 무사증 입국 잠정 중지 및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 발급 이후 입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 전체 127회 중 총 69번의 항공편 조정 안건 논의

< 항공편 조정 사항 예시('20. 7. 8.) >

일자	차수	주요내용
'20. 7. 8.	제2차	■ 방역강화 대상국가 재입국허가 제한 - (조치사항) 방역강화 대상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불허 - (예외) 필수적 기업활동, 취재, 학술활동 및 인도적 사유 ■ 방역강화 대상국가 정기편 좌석 점유율 60% 이하로 운항 (‘20. 7. 9.~)

□ 다만, 외국인의 입국제한이나 항공편 조정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권한¹⁾으로써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은 권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심의가 아닌 협의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협의회 위원 수 등 그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률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

그 외, 명칭과 관련하여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로 기존에 사용한 만큼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있어야 하겠음.

□ 아울러, 검역법 체계와 개정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제2장 검역조사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제1장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14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는 제5조의2로, 안 제14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는 제5조의3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1) 「정부조직법」 제30조(외교부) ① 외교부장관은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3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은 검역이 감염병 예방 및 국민 등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의사결정 절차 마련 및 검역관리위원회 격상 취지와 감염병 위기 시 원활한 범부처 협의 및 방역조치 결정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제도화 취지에 동의함.

< 관련 부처 및 단체 의견 >

구 분	제시 의견
행정안전부	(검역관리위원회) 「행정기관위원회법」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도록 규정(제5조, 제7조)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현재도 감염병 등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중대본회의 개최를 통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협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협의회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자 하는 운영 방향에는 별다른 이견 없음. - 다만, 향후 팬데믹 발생 시 항공편 운항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기 정보상 가장 낮은 관심 단계에서부터 항공편 조정을 논의하는 것을 다소 과도한 측면 - 검역법 내 ‘항공편’은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역법 내에 정의가 있는 ‘운송수단’을 활용하여 규정 마련 필요 - 따라서, ‘항공편 조정’을 삭제하거나 ‘운송수단 운영’으로 수정 필요
대한의사협회	각종 위원회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방역과 검역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의료 전문가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 6788-5501

1. 감염병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감염병예방법」 제9조, 제10조('11.2.16. 설치)
- **(위원구성)** 위원 30명 이내(당연직(12명,위원장 포함), 위촉직(17명))
 - * 감염병 예방·관리 담당 공무원, 감염병 등을 전공한 의료인, 시도지사 협의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추천 등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임명
- **(위원임기)** 2년(제8기 위원회 : '25.2.17.~'27.2.16., 임명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
- **(운영)** 질병관리청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기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감염병의 예방·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증진
- 감염병 의심 사망자에 대한 해부명령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전 비축 및 장기 구매에 관한 사항
- 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
- 감염병의 예방·치료 의료·방역 물품의 사전 비축, 장기 구매 및 생산에 관한 사항
- 감염병의 의료·방역 물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한정)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
-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에 관한 사항
-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등

2. 전문위원회

- **(설치목적)** 전문적 사항을 심의를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 **(설치근거)** 「감염병예방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구성)** 총 12개 전문위원회 구성,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임명
- **(임기)** '25.2월 ~ '27.2월 * 감염병관리위원회 임기와 동일

【전문위원회 주요기능】

전문위원회	주요 기능
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지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예방접종대상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정책 등
②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여부, 그 보상 기준 및 방법 등
③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및 감염인의 보호·지원 등
④ 결핵 전문위원회	결핵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 및 결핵관리종합계획 등
⑤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역학조사 방법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역학조사관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등
⑥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	신종 및 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감시 및 정책 등
⑦ 의료관련감염 전문위원회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의료관련 감염 관련 관리 및 감시 정책에 필요한 사항, 의료기관의 의료 관련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⑧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감염병 위기관리 대비 및 대응과 관련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감염병 위기관리를 대비한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등
⑨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
⑩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감염병분야 R&D 중장기 추진전략 등
⑪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내성균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
⑫ 검역 전문위원회	검역관리기본계획 수립 관련 심의,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 관리지역의 지정·해제 심의, 해외감염병의 검역관리대책에 관한 검토 및 자문, 검역조사·조치에 관한 검토 및 자문, 검역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참고 2

위기경보 단계별 주요 대응 활동

위기경보	위기 유형		주요 대응 활동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관심 (Blue)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 현 감염병의 발생	- 필요시 질병관리청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위기징후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대응 역량 정비 - 필요시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주의 (Yellow)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국내 원인불명·재출 현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현장 방역 조치 및 방역 인프라 가동 -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경계 (Orange)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국내 원인불명·재출 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행안부) 범정부 지원본부 운영 검토 - 필요시 총리주재 범정부 회의 개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방역 및 감시 강화 등
심각 (Red)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국내 원인불명·재출 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범정부적 총력 대응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 검역관리위원회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내 위원
 - 검역 및 출입국 등 관련기관 공무원
 - 검역관련 의학*, 약학, 보건, 출입국, 항공, 해운 분야 등의 전문가
 - * 예방의학, 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기능)**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검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 위원회는 분기별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 *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내 위원
 - 질병관리청 및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 국무조정실·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 **(기능)**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이상 또는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
 - *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